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대한민국

http://www.motie.go.kr

2015년 9월 30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.방송.통신 9월 29일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김용채 과장(044-203-4070), 박석주 사무관(4072)
투자유치과 주소령 과장(044-203-4080), 곽진철 사무관(4083)

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 박차

- 2015년도 제4회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 -

- 제1호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 등 7건의 안건 심의·의결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도 제4회 외국인투자위원회(위원장 :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)를 개최('15.9.17~9.23, 서면)하고,

○ 제1호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, 글로벌기업 지역본부(이하 헤드쿼터) 및 연구개발시설(이하 R&D센터) 지정, 비영리법인 투자의 외국인투자 인정 등 7건의 안건을 심의·의결했다.

○ 이번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은 그간의 규제완화와 FTA 허브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고부가가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다는 의미가 있다.

1 이탈리아 아이디에스(IDS)사의 R&D센터를 제1호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

○ **아이디에스(IDS)사**의 R&D센터는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제도 도입 후 최초로 지정된 사례로, 우리나라의 방위산업·항공기·자동차 등 관련 분야의 경쟁력 제고*에 기여할 전망

* IDS사 R&D 센터는 향후 외국인직접투자(FDI) 300만 달러 투자와 22명을 고용해 탐지 은폐기술인 스텔스(Stealth) 관련 사업을 수행할 계획

○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투자규모에 비해 고용창출 등 경제기여도가 높은 지식서비스업* 등을 유치하기 위해 '11년 도입했다.

* 지식서비스업 : 전자상거래, 광고, 연구개발, 전시 및 행사대행 등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4개 업종

- 다만, 제조업과 유사한 지정요건으로 그간 지정사례가 없었으나, 서비스업의 규제완화*에 힘입어 금번 최초로 지정되었으며, 향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유치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.

* 외국인투자기업 입주수요가 지정 면적대비 60%→30% (제7차 무투회의, '15.3.19)

2 한국 바스프 등 3건의 R&D센터와 2건의 본부설치(이하 헤드쿼터) 인정

○ 한국바스프(R&D센터)는 반도체·디스플레이 분야,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 및 시스템(헤드쿼터·R&D센터)은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헤드쿼터 기능 및 첨단기술 개발을 수행했다.

* **(기존인정)** 헤드쿼터 3건(솔베이코리아, 한국바스프, 지멘스에너지솔루션), R&D센터 3건(솔베이R&I센터, C&C신약연구소, 지멘스 메디칼연구소) 등 6건

○ 중국, 싱가포르 등 주변 경쟁국*에 비해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의 핵심인 세계적인 헤드쿼터와 R&D센터 유치가 저조한 상황에서, '세계적인 기업 헤드쿼터와 R&D센터 인정제도'**를 도입('14.12월)·운영 이다.

* (중국) 홍콩, 상하이,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 1500개 이상의 지역본부가 활동
(싱가포르) 1986년부터 본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400개 이상의 지역본부 인증

** 외국인기술자 및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부여되며, 현재까지 총 11건(신규 5건)이 지정됨

- 향후 지식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를 위해, 세계적인 헤드쿼터와 R&D센터에 특화된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3 비영리 학술재단*인 내셔널지오그래픽의 투자를 외국인 투자로 인정

* 비영리법인요건 : 외국인이 학술 및 교육 진흥목적으로 5천만원이상 출연

○ 내셔널지오그래픽은 비영리학술재단의 외국인투자 진출을 통해, 과학 현장탐사 · 탐험, 연구인력 양성, 환경 보존 연구지원과 함께 과학·문화 방송 컨텐츠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.

*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앞으로 5년간 약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

○ 이번 내셔널지오그래픽의 한국 진출은 아시아 총괄 재단의 기능*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의의가 있으며, 투자가 전용 사무공간과 투자지원 인프라가 집중된 인베스트 코리아 프라자 IKP(Invest KOTRA Plaza)에 입주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.

* 미국 워싱턴 본사 외에 해외재단은 유럽에만 존재하고 있음

4 전북 익산 식품클러스터와 충남 송산2 산업단지를 중소협력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지정

○ 전북 중소협력 외투단지(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)에는 식품관련, 충남 중소협력 외투단지(송산2)에는 당진 현대제철소와 연계한 자동차 부품, 금속가공 등 연관 분야의 기업을 중점 유치하기로 했다.

○ 특히, 익산 식품클러스터는 한·중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이후 중국내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화교권의 식품클러스터 입주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외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세감면 등으로 활발한 외자유치가 기대된다.

* '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'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 투자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('13.4월)되었으며, 최소 면적규모 요건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(33만제곱미터)의 1/4임.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(투자정책과 김용채 과장(☎ 044-203-4070), 박석주사무관(☎ 044-203-4072) 투자유치과 주소령 과장(☎ 044-203-4080), 곽진철 사무관(☎ 044-203-4083)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주요 의결 안건 내용

1. 대전 IDS社 외국인투자지역(서비스형)

○ 위치/면적 : 대전 유성구 미건테크노월드 빌딩 內/347.99㎡

○ 투자기업 : IDS社 (대표 : 김재환, FDI 300만 달러, 고용 22명)

- 외국인 투자가 : Ingegneria Dei Sistemi S.P.A (이탈리아)
- 주요사업 : 스텔스 엔지니어링 사업, RCS/EMI/EMC측정 사업, 스텔스 항공기/함정 안테나 레이돔 및 신소재 적용 연구

2. 내셔널지오그래픽 외국인투자 인정

○ 사업내용 : 과학 현장탐사, 탐험, 환경보존 연구지원

○ 출연금 : 5억원 (FDI 약 50만불, '15.6월)

○ 투자계획 : '15년~'19년 100억원 이상 투자(투자가: National Geographic)

* 향후 5년간(2015~2019) 연간 11억원, 총 60억원 상당 투자유치 확정(기부금)

3. 전북 익산 식품클러스터 외투지역(중소협력 단지형)

○ 위 치 :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(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內)

○ 면 적 : 116,000㎡

○ 사업비 : 17,947백만원 [산업부 : 10,768백만원 (60%), 전북·익산시 : 7,179백만원 (40%)]

4. 충남 송산2 외투지역(중소협력 단지형)

○ 위 치 : 충청남도 송산면 송산2 일반산업단지

○ 면 적 : 134,023㎡

○ 사업비 : 46,623백만원 [산업부 : 27,974백만원 (60%), 충남·당진시 : 18,649백만원 (40%)]

참고 2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개요

□ **(도입목적)** 지식서비스산업 등 **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 투자 활성화 촉진** ('11년 외촉법 개정, 도입)

○ 서비스형 외투지역은 **지정 가능한 서비스업종이 다양**하고 입주 자격 등의 요건이 낮아 **투자액에 비하여 산업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업종에 적합**

□ **(현황) 서비스업 입주 '개별형 외투지역'은 일부지정***되었으나, **'서비스형 외투지역'** 지정은 없는 상황

* 전체 개별형 외투지역 71개 중 서비스업은 7개 (관광 4개, 연구개발 1개, 물류 2개)

<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제도 개요 >

► **(개요)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종*** **외투기업 입주를 지원**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가 신청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**산업부 장관이** 지정

* R&D, 금융보험업, 지식서비스업·산업지원서비스업, 문화사업, 관광사업 등 6개업종

► **(입주자격)** 외투지분 30% 이상, 투자금액 1억원 이상 + 상시고용 인원 기준*

* R&D(연구인력 5인이상), 금융보험업, 지식서비스업, 산업지원서비스업, 문화사업(30인 이상)

► **(인센티브) 임대료 보조 (조세감면은 없음)**

* **임대료의 50%범위** 내에서 국·지방비 매칭하여 임대료 지원

* 매칭비율 : 수도권(국30, 지70), 비수도권(국60, 지40)

□ **(입주업종 요건)**

입주대상 업종	외투지분 / 금액	상시고용인원	임대면적 대비 투자 준수금액
○ R&D	외투지분 30%이상, 투자금액1억원 이상	연구인력 5인이상	임차면적에 해당 하는 부지 or 건물 가액의 100% 이상 투자(5년이내)
○ 금융보험업		30인 이상	
○ 지식서비스업			
○ 산업지원서비스업			
○ 문화사업*			
○ 관광사업* (카지노업 제외)			

참고 3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R&D센터 제도 개요

□ **글로벌기업 헤드쿼터**

○ **(요건) 모기업 요건, 기능요건, 규모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업**

◆ **(모기업 요건)** ① 또는 ②의 요건을 충족
① 모기업이 과거 5년간 평균매출액이 3조원 이상인 기업
② ①에 해당하지 않으나 S&P 500 등 선진 자본시장 우량기업 지수, 세계시장점유율,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

◆ **(기능 요건)**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것
① 판매전략의 수립 및 판매 관련 활동 등의 지원·조정
② 생산계획의 수립 및 생산품목, 생산량 등의 조정
③ 원재료 등 조달계획의 수립, 조달 거래처 선정 또는 물류기지 등의 운영
④ 인사 정책의 수립·조정 및 인사권의 행사
⑤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 관련 활동 등의 지원 및 조정
⑥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의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 및 조정의 기능

◆ **(규모 요건)**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
① 헤드쿼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10인 이상
② 외투금액 1억원이상, 모기업이 50%이상 출자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일 것

○ **인센티브**

구분	지원내용
소득세 감면	◆ 헤드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**소득에 상관없이 동일 세율(현행 17%)을 적용**하는 특례조치를 **지속적으로 적용**
국제조세 절차지원	◆ 외투기업 국내법인과 해외자회사간 거래시 **국세청과 관세청이 공동참여하여 적정가격 범위를 협의**하는 **사전조정제도를 통해** 국세와 관세간 가격책정 차이에 따른 불확실성 조기 해소

구분	지원내용
	◆ 우리나라와 헤드쿼터 본사 소재국간 무형자산의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 **헤드쿼터와 과세당국간 사전승인(Advance Pricing Agreement) 신속절차(Fast track)**를 통해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
과세서류 간소화	◆ 헤드쿼터의 용역거래에 대하여 **과세 증빙자료 제출의무 제외대상 확대** * (현행) 모든 용역거래 합계 5억원 이하, 특수관계자간 용역거래 합계 1억원 이하 → (개선) 모든 용역거래 합계 10억원 이하, 특수관계자간 용역거래 합계 2억원 이하
출입국 편의지원	◆ 헤드쿼터 임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1~3년의 기간이 부여되는 D8 비자 체류한도를 **파견기간에 맞추어 최대 5년까지 확대**

□ R&D센터

○ 요건

◆ R&D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업

① 석사 또는 3년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학사가 5명(상시고용) 이상일 것
② 시설투자금액 1억원 이상, 외국인투자 비율 30% 이상일 것

○ 인센티브

구분	지원내용
소득세 감면	◆ 외투 R&D센터에 근무하는 **외국인기술자**에 대한 **소득세 감면(2년간, 50%)을 '18년까지 적용**
R&D 지원	◆ **외투 R&D센터가 국내 산학연과의 협력 연구**를 추진하는 경우 **산업클러스터 지원사업** 등을 통해 지원 ◆ **ATC 사업* 등**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과제에 외투 R&D센터와 **국내 연구소간 공동연구**를 지원 * 기술 잠재력이 있는 중소·중견기업 부설연구소를 우수기술연구센터(ATC)로 지정하여 세계적 연구소로 육성하는 사업
입지 지원	◆ 외투기업의 R&D센터의 입지지원 대상에 현행 **공장부지 외에 건물임대**도 지원(현금지원제도를 통한 건물임대료 지원)